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생물자원관 사업 대상 추가 및 감사 임명권자 변경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688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생물자원관의 사업 대상 추가	2
2. 생물자원관법인의 감사 임명권자 변경	4
※ 참고자료	9
1.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현황	9

I. 제안경위

2024년 7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생물자원관의 사업 대상에 배양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Ⅲ. 검토의견

1. 생물자원관의 사업 대상 추가

개정안은 생물자원관의 사업 대상에 배양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사업) 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5조(사업)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유전자원, 천연물, <u>종자</u> 등 생물 자원 소재의 확보·배양 및 제공	2. ----- <u>종자, 배양체</u> -----
3. ~ 12. (생략)	3. ~ 12. (현행과 같음)

생물자원관이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수집·보존·연구 및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것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것을 말함¹⁾.

국립생물자원관은 다양한 생물소재의 안정적 보전과 지속적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야생생물 유전자원은행, 미생물 배양체은행, 야생생물 천연물은행, 야생식물 종자은행)을 운영²⁾

1) 현행법상 생물자원관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총 3개임.

하고 있는데,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의 확보·배양 및 제공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배양체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³⁾.

이에 개정안은 생물자원관의 사업 대상에 배양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국립생물자원관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배양체를 현행법의 사업 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2) 참고자료1.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현황

3)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 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연구
2.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등 생물자원 소재의 확보·배양 및 제공
3.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4. 생물자원의 보전·이용 기술 개발 및 실용화·산업화 지원
5.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전시·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운영
6.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7. 국내외 다른 기관과의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기술자료·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8.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보전·관리에 대한 정책 지원
9. 생물종 목록 및 확증표본(確證標本) 소재 정보 구축
10. 생물자원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1. 생물자원의 분류·명명 및 등록
12. 그 밖에 생물자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 생물자원관법인의 감사 임명권자 변경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감사를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임원 및 직원) ① ~ ④ (생략)	제8조(임원 및 직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u>기획재정부장관</u> 이 임명한다.	⑤ ----- ----- <u>환경부장관</u>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7조는 생물자원관의 사업을 분야별로 분담하고,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및 조사·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설립·운영하도록 규정⁴⁾하고 있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하

4)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제5조에 따른 생물자원관의 사업을 분야별로 분담하고,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및 조사·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물자원관을 설립·운영한다.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②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 분담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淡水)생물 분야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연안생물 분야

③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은 법인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함.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현황]

연번	기관유형	기관명	설립일	설립근거
1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	'67.11	한국수자원공사법
2	준정부기관	한국환경공단	'10.1	한국환경공단법
3		국립공원공단	'87.7	국립공원공단법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9.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5		국립생태원	'13.10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기타 공공기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00.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7		한국환경보전원	'23.12	환경정책기본법
8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17.12	민법 및 수자원법
9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5.6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20.8	
11		한국상하수도협회	'02.1	수도법

※ 출처: 환경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⁵⁾하면서 공기업의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⁶⁾하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⑤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공공기관은 각 개별법 또는 정관에 따라 감사의 임명권자를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8조는 생물자원관법인의 감사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⁷⁾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를 임명하는 경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등으로 감사 임명 절차 진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음⁸⁾.

이에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고 있는 생물자원관법인의 감사를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기타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아닌 주무부처가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운영관리의 주체가 소관 주무부처라는 점과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감사 임명 사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⑤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7)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원 및 직원) ① 생물자원관법인에 임원으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3명 이내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생물자원관법인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명한다.
- 8)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생물자원관법인의 비상임이사 임명 소요기간은 8~50일(평균 28일)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생물자원관법인의 감사 임명 소요기간은 44일~66일(평균 53일)임.

[환경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감사 임명 규정]

기관명	관련법	정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임원) ② 사장 과 감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
한국수자원 조사기술원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 조(수문조사의 실시) ⑦ 국가는 수문조사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 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명) ① 원장, 이사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 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 이 임명한다.
환경환경 보전원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한국환경보전 원) ⑧ 보전원의 원장을 제외한 임직원 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 한다.	제7조(임원의 임명) ③ 비상임이사·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 천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한다.
한국상하 수도협회	「수도법」 제57조(임원과 선출 방법 등) ① 협회에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③ 협회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이사 및 감사의 선출) ③ 감 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수자원환경 산업진흥	-	제26조【임원의 선임】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감사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 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 사하지 못한다.

※ 출처: 환경부

[타부처 산하 기타공공기관 감사 임명 규정]

기관명	관련법	정관
국립해양 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임원) ③ 관장은 정관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 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6조(임원의 임면) ④ 감사는 임원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한국로봇 산업진흥원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 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③ 진 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과 직원을 둔다.	제6조(임원의 임면) ④ 감사는 임원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 한다.
국립항공 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법」 제6조(임원) ③ 관장 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임원의 임명) ④ 감사는 임원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 출처: 환경부

문 의 처
02)6788-5541

※ 참고자료

1.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현황

은행명	개소 년월	주요 역할	사진
야생생물 유전자원 은행	'10.10.	DNA 분석, 종판별 등 학계·연구계의 주요 소재인 생물조직 및 DNA 보존·관리·분양 ※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유전물질, 자원관에서는 주로 DNA나 DNA를 추출할 수 있는 생물의 일부인 조직 형태로 보존	
미생물 배양체은행	'13.10	원핵생물, 균류 등 미생물 배양체 보존·관리·분양을 통해 식품, 의약 등 산업계 지원 ※ 배양체(Cultures): 미생물, 식물, 동물알(또는 배)이나 동식물의 조직 일부를 외적조건을 조절하여 인공적으로 증식시킨 개체, 자원관에서는 주로 미생물 배양체(Microbial cultures)를 보존	
야생생물 천연물은행	'13.10	화장품, 건강식품, 의약 등 산업계의 주요 소재인 생물자원의 추출물 보존·관리·분양 ※ 천연물(Natural product): 살아있는 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화합물 또는 대사산물의 총칭, 자원관에서는 식물 추출물과 거미 독 등을 확보	
야생식물 종자은행	'14.10	야생식물의 자원화·소재화·대량증식 등을 위한 식물종자 보존·관리·분양 ※ 종자(Seed): 종자식물의 번식단위, 자원관에서는 종자, 포자(이끼, 고사리류의 씨) 등을 모두 포함해서 총칭	

※ 출처: 환경부